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30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6,452,390원, 지방교육세 3,194,100원, 농어촌특별세 3,19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가. 원고는 2017. 4. 4.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19. ○○ ○구 B 671㎡, 2017. 9. 25. ○○ ○구 C 2941㎡, 2017. 10. 13. ○○ ○구 D 2217㎡, 2018. 1. 25. ○○ ○구 E, F 3564㎡, 2018. 3. 30. ○○ ○구 G 2758㎡, 2018. 7. 30. ○○ ○구 H 9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됨,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20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20.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56,452,390원, 지방교육세 3,194,100원, 농어촌특별세 3,196,150원 합계 62,842,640원을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1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시 ○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1,000,000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정하고 있고, 행정관행 상 직접세무조사(현지 출장조사 내지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바,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서면조사만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벼를 재배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행정지도로 '기장의무 준수'라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시 ○구 세무조사 운영규칙(2020. 5. 15. 시행, 제601호 일부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1,000,000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는 자기 구속적 행정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직접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제1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3항 제1호), 이때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H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원고가 벼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9, 13,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매출액 및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등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면 유예기한 내에 원고 명의의 거래내역이 없다. 또한, 원고의 법인장부 확인결과,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어디에도 농약·비료·종자 등 구입금액, 농기계 임차비, 농작물 판매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작물재배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진 벼 판매거래 내역을 2017년부터 2019년도 법인세로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의 명의로 된 농작물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2019. 12. 30. 이후부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거래내역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의 것이고, 나머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I조합에 쌀을 판매하거나 농약 등을 매수한 내역일 뿐이며, 더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극히 적은 양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벼 판매대금이 원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입금되어 있고, 대표이사 개인의 경작활동과 구분되는 원고의 매입·매출자료가 없으므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벼를 경작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자경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제1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제11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면서도,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영리목적의 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대규모 농지를 취득할 개연성이 높고, 농업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면 제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20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법인의 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4-25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